

-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544호

다. 제출일자 : 2015. 6. 12.

라. 회부일자 : 2014. 6. 17.

## 2. 제안사유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(2013.3.23., 2014.11.19.)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6조 제2항, 제6조 제3항 4호, 5호 중 “국 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개정
- 나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부칙 신설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, 제164조

- 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사항('13.3.23)<sup>1)</sup>을 반영하여 「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」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

#### ※ 참고 : 「지방자치법」 관련 규정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- 후략 -  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### 다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

- 현재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“수도권교통본부”<sup>2)</sup>를 설립하여<sup>3)</sup> 운영하고 있으며,

동 본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2005년 2월 『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』을 제정한 바 있음

1) 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전부개정

-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·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- 중략-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편함(안 제36조·제42조 및 제43조)

2) 설립당시의 명칭은 “수도권교통조합”이었으나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약변경을 통해 2007년 9월 “수도권교통본부”로 명칭을 변경하였음

3) 3개 시도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됨

○ 동 동의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된 사항을 『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』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국토교통부의 명칭이 지난 '13.3월에 변경되었고, '수도권교통본부'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'수도권교통조합 법규집'(13.7월)에도<sup>4)</sup> 이미 “국토교통부”와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규약이 변경되어 있음을 볼 때,

서울시가 2년여가 더 지난 시점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바,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

4) 「수도권교통조합 법규집」 p.6 참조

「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」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 ① (생략)

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 5인, 인천광역시 3인, 경기도 5인, **국토교통부** 2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~ 3. (생략)

4. **국토교통부**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

5. **국토교통부장관**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1인

④ ~ ⑥ (생략)